

감사결과보고서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종합감사 -

2024. 6.

방 송 통 신 위 원 회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감사대상기관 업무 현황	2
III. 감사결과	5
□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5
(1) 본부회의비 예산집행 부적정(주의)	6
(2) KOBACO연수원 운영 부적정(통보)	10
(3) 채용제도 운영 및 비정규직 전문위원 채용절차 부적정(주의)	16
(4) 지각·조퇴 및 외출 시 연차휴가 공제 부적정(통보)	21
(5) 강등 및 정직처분 직원에 대한 보수 감액 규정 운영 부적정(통보)	24
(6) 창립기념일의 유급휴일 운영 부적정(통보)	26
(7)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자 선정 부적정(주의)	28
(8) 공익광고 제작 및 확산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 부적정(주의) ..	35
(9)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부적정(주의)	39
(10) 국고보조사업 관련 여비집행 부적정(통보)	42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¹⁾하여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사각 발생이 우려되고 있었다.

이에 공사의 주요 사업 및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2024년 방송통신위원회 자체감사 계획에 반영하여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공사가 2020년 이후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광고판매 및 진흥 등 공사의 주요사업과 인사운영, 복무관리, 계약 및 예산 편성·집행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 확인 및 개선 대안을 마련하는 데 감사중점을 두었다.

3. 감사실시 과정

감사실시에 앞서 공사에 대한 기존 감사결과, 언론보도와 국회 논의사항,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이후 사전 수집·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인원 10명을 투입하여 예비조사(2024. 2. 26.~3. 8., 총 9일)를 거쳐 2024. 3. 11.부터 같은 해 4. 12.까지 총 24일간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공사로부터 업무처리 경위와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을 듣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이후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검토를 거쳐 2024. 6. 10.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1) 직전 감사 2020년 2월

II. 감사대상기관 업무 현황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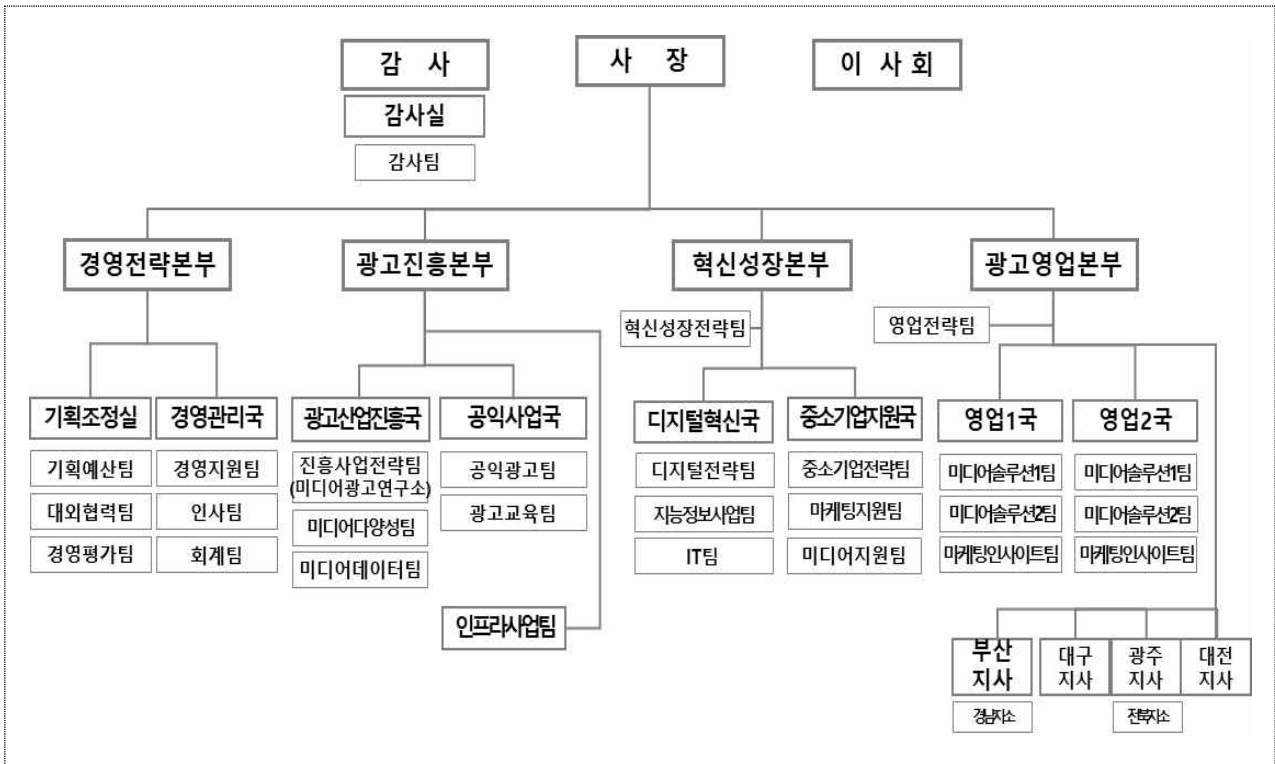
1. 설치 목적 및 연혁

공사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광고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2012. 5. 23. 출범³⁾하였다.

2. 조직 현황

공사는 [그림]과 같이 사장, 감사 및 상임이사 4명 등 총 6명의 상임임원과 4본부 2실 7국 27팀 4지사를 두고 있으며, [표 1]과 같이 정원은 2024년 1월 말 기준 319명이다.

[그림] 조직도(2024년 1월 말 기준)



2)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 업무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3) 1981년 舊 한국방송광고공사 설립 → 2008년 방송광고독점 헌법불합치 결정 → 2012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

[표 1] 정원 및 현원(2024년 1월 말 기준)

구분	계	임원(상임)	일반직	전문직	업무 지원직	임금피크 전문직
정원	319	6	264	13	7	29
현원	307	5	265	11	6	20

자료: 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3. 예산 현황

공사의 2024년 예산은 [표 2]와 같이 수입 1,467억 원과 지출 1,467억 원이고, 그 중 수입 예산은 자체 수입 1,350억 원(방송광고판매, 방송회관·광고문화회관 운영 등) 및 정부보조금 117억 원(미디어다양성증진사업 등 방통위/문체부/과기부 위탁사업)으로, 지출 예산은 광고판매 위탁대행 수수료 756억 원 및 인건비 303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2024년 예산 등

(단위 : 억 원)

구 분		'22년 결산	'23년 결산	'24년 예산	비고
수입	광고판매 수탁수수료	1,154	871	1,010	
	시설운영수익	194	207	226	광고문화회관, 방송회관, 코비코연수원 운영
	기금사업 수익	107	113	117	방통위, 문체부, 과기부 보조금
	영업외수익	96	80	111	금융수익, 투자수익 등
	부대사업수익	2	2	3	광고전송시스템 전송료, 교육원 수강료
	계	1,553	1,273	1,467	
지출	위탁대행 수수료	912	694	756	광고회사 대행수수료 지급
	기금사업원가	107	113	117	
	인건비	299	296	303	
	경비 및 사업비	342	333	291	
	계	1,660	1,436	1,467	
당기순이익		△107	△163	0	

자료: 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4. 주요사업 현황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방송광고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 방송광고제작산업 육성, 광고 표준화, 광고효과 측정, 광고 유통기반 구축·운영, 광고 관련 조사·연구·교육, 공익광고 등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
- 시청점유율 조사·검증·산정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위탁하는 업무
-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산업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 상기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Ⅲ. 감사결과

□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 별첨

방송통신위원회

주 의 요 구

제 목 본부회의비 예산집행 부적정

기 관 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소속 직원 간담회, 외부 관계자 접대비 등의 용도로 업무추진비, 판매촉진비, 회의비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공사는 2017년까지 사장 등 임원들이 업무추진비와 별도로 접대비 성격의 직위별 판매촉진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다가 2017. 11. 14.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요구’¹⁾를 받은 후 2018년부터 임원들의 직위별 판매촉진비 예산을 폐지하고 [표 1]과 같이 각 본부의 회의 관련 경비 용도로 사장, 감사, 경영전략본부장, 광고진흥본부장, 혁신성장본부장, 광고영업본부장이 사용할 ‘본부회의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1) 공사는 2017년까지 실·국 회의비와 부서(팀) 회의비로 구분하여 편성·집행하였고, 2009년에는 감사원으로부터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관리대장에 법인카드 사용 명세를 제대로 기록·관리하지 않았던 점 ▲팀 회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팀 회의비로 처리한 경우가 2007년부터 2009년 말까지 1,119회에 걸쳐 42,708천 원에 달할 정도로 법인카드를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던 점 등에 대해 ‘주의 요구’를 받음

[표 1] 본부회의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18년~'23년)

(단위: 천 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사장 ²⁾	편성	33,600	22,080	22,080	22,080	22,080	22,080
	집행	3,867	16,845	14,743	11,702	21,343	22,079
감사 ³⁾	편성	16,800	12,480	12,480	12,480	12,480	12,480
	집행	15,662	11,506	10,396	12,154	11,831	-
경영전략본부장	편성	16,800	12,480	12,480	12,480	12,480	12,480
	집행	15,083	9,555	8,810	9,949	12,476	11,733
광고진흥본부장	편성	14,400	10,560	10,560	10,560	10,560	10,560
	집행	14,381	12,657	9,975	6,346	9,446	10,499
혁신성장본부장 ⁴⁾	편성	14,400	10,560	10,560	10,560	10,560	10,560
	집행	14,383	11,276	10,544	9,453	9,648	10,555
광고영업본부장	편성	16,800	11,520	11,520	11,520	11,520	11,520
	집행	16,793	12,014	7,661	10,204	10,300	11,498

자료: 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 규정 및 판단기준

공사 「예산운용지침」 Ⅲ. '주요 비목별 집행지침' ① '업무추진비'와 ② '회의비' 규정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정보수집 및 조사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 소속 직원 및 대외 유관기관 등에 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기타 업무추진에 필요한 제경비의 용도로, '회의비⁵⁾'는 각 본부, 실/국, 팀, 지사 및 부서의 회의 관련 경비, 업무 관련 대책회의 등 제경비의 용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와 회의비를 집행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된 경비임이 입증되도록 집행 목적, 일시, 장소 및 집행 대상 등을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2) 사장은 2017. 12. 6.부터 2018. 9. 3.까지 공석

3) 감사는 2022. 7. 22.부터 2024. 4월 현재까지 공석

4) 2018. 11. 30.까지는 미디어사업본부장이었음

5) 회의비에 관하여 2005. 6. 27. 기획재정부에서는 "회의비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이라고 정의하는 등 회의비는 회의 개최를 위해 실제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의미하고, 공사는 회의의 주된 참석자가 내부 직원인 경우에는 '회의비'로, 외부 관계자인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로 처리하고 있음

따라서 공사는 본부회의비를 내부직원들과의 회의경비 용도로 집행하고 외부 관계자와의 식사비용 등 대외 유관기관 등에 대한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며, 본부회의비로 내부 직원들과의 회의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된 경비임이 입증되도록 집행 목적, 일시, 장소 및 집행 대상(사용 대상자 소속과 성명)을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공사 사장 등 상임위원 6명은 2018년 본부회의비로 외부 관계자들과의 식사 320건(전체 본부회의비 집행 식사 횟수 728건의 44%)의 식사 비용을 집행하고, 2023년에는 52건(전체 본부회의비 집행 식사 횟수 704건의 7.4%)의 식사 비용을 집행하는 등 [표 2]와 같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광고업계 의견청취’, ‘방송광고 신탁증대 요청’ 등을 목적으로 하는 외부 관계자들과의 식사 776건(전체 본부회의비 집행 식사 횟수 4,279건의 18.1%)의 식사 비용을 본부회의비로 집행하였다.

[표 2] 연도별 본부회의비 집행현황(외부 관계자)

(단위: 건)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식사 횟수	728	715	641	743	748	704	4,279
외부 관계자 식사 횟수	320	88	103	106	107	52	776
외부 관계자 식사 집행률	44.0%	12.3%	16.1%	14.3%	14.3%	7.4%	18.1%

자료: 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공사 사장 등 상임위원은 본부회의비를 집행하면서 집행대상자 항목에 소속과 인원수만 기재(‘○○국 직원 5명’ 등)할 뿐 각각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는 등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79건의 본부회의비를 집행하면서 98.2%에 해당

하는 4,203건에 대해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관리대장’에 집행대상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⁶⁾

그 결과, 공사 본부회의비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은** 앞으로 본부회의비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운용지침」과 다르게 외부 관계자들과의 식사비용으로 집행하거나 집행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6) 실·국 또는 팀 회의비를 집행하는 경우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관리대장에 집행일시·장소·금액·집행사유를 기재하고 집행대상자의 소속과 성명(‘kobaco 팀장 ○○○’ 등)을 각각 기재하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

통 보

제 목 KOBACO연수원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1984년 12월 구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 광고, 언론 및 공공기관 등의 연수 목적으로 설립한 KOBACO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2012. 5. 23. 승계받아¹⁾ 공사 「고정자산 운영관리규정」과 「연수원 관리지침」 등에 따라 운영·관리하고 있다.

[표 1] 연수원 현황

구분	내용	
위치	경기도 양평군 일대	
면적	대지 369,578㎡, 건물(본관, 화합관) 연면적 13,143㎡	
시설	교육	대강의실 3실, 중강의실 3실, 대강당 1실 등
	숙박	2인실 34실, 4인실 38실, 5인실 18실 등
	체육	잔디구장, 수영장, 배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등
	편의	식당, 연회장, 휴게실 등

자료: 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공사의 연수원 운영 결과, 최근 온라인 교육 비중 증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전염병 발생 등에 따른 이용자 수 감소 등의 영향²⁾으로 [표 2]와 같이

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373호, 2012. 2. 22., 제정] 제24조 및 부칙 제1조, 제2조, 제9조 제1항에 따라 2012. 5. 23. 구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이 폐지되고 공사가 설립되었으며, 공사는 구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설립과 동시에 포괄적으로 승계받음

2) 2021. 9월 ‘연수원 효율화 방안 수립을 위한 컨설팅’ 보고서 참조

2014년부터 운영 수지 적자가 시작되어 2023년까지 10년 동안 계속하여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표 2] 연수원 연도별 이용자 수 및 손익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용자 수	44,407	44,879	40,549	36,009	32,274	24,849	8,923	11,948	22,920	21,180
당기순이익	△135	△239	△552	△948	△1,114	△1,388	△1,736	△1,511	△971	△847

주: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당기순손실 합계는 9,441백만 원에 이릅니다.
 자료: 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2. 연수원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후 미추진

가. 관계 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여야 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해당기관의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³⁾

그리고 공사는 연수원 운영 결과 [표 2]와 같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계속하여 운영 수지 적자를 기록(총 9,441백만 원)하고 있어 운영 수지 개선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공사는 연수원 운영 수지 적자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마련된 개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운영 수지 적자를 줄이거나 흑자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라 2012년 공사 설립 시부터 2024년 현재까지 기획재정부로부터 같은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받음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공사는 연수원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0. 12. 7. ㉔추진단을 설립하여 2021. 3. 22. 외부 업체에 컨설팅을 의뢰⁴⁾한 결과, 시설개선을 통한 적자 축소,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위탁 운영, 매각 추진 등의 세 가지 검토의견을 제시받고 같은 해 11. 22. 임원회의⁵⁾ 등을 거쳐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위탁 운영 방안’을 공사의 연수원 운영 효율화 방안으로 마련하였다.

그리고 공사는 같은 해 12. 1. ㉕TF를 설립⁶⁾하여 외부 업체에 컨설팅을 추가 의뢰⁷⁾하였고, 2022. 5. 16. 임원회의⁸⁾에 아래와 같이 민간위탁에 따른 적정 토지 사용요율, 공모 추진 일정, 제안 평가 기준 등을 포함한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함으로써 위 효율화 방안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 또한 마련하였다.

〈2022. 5. 16. 임원회의에 보고한 주요 사업 추진 계획 내용〉

- (사용료) 최소 토지사용 요율은 대상부지 공시지가 합산금액('22년 346억)의 5%(연간 17.3억)
- (공모 일정) 공고 2022. 6. 15.~8. 16.(공사 홈페이지 등), 사업설명회 2022. 7월(장소: 연수원 대강당, 주관: ㉔팀 ㉕파트), 사업계획서 접수 2022. 8. 17.(㉔팀),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2. 9월(장소: 본사 17층 대회의실, 주관: ㉔팀 ㉕파트) 등
- (제안 평가 기준) 기술부문 800점(사업능력 및 재무계획 200점, 개발계획 200점, 운영계획 200점, 공공성 및 환경보존계획 200점), 가격부문 200점 등

그 후 공사는 같은 해 9. 6. 기획재정부에 연수원을 민간위탁개발 추진하고 그에 따른 경영수지 개선 효과는 연간 2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의 자산 효율화 방안을 공공기관 혁신계획으로 제출⁹⁾하였고, 같은 해 11. 11. 제

4) ‘연수원 효율화 방안 수립을 위한 컨설팅’[계약업체 (주)㉖㉗, 계약기간: 2021. 3. 22.~9. 23., 계약금액: 21,450,000원]
5) a사장, b본부장, c본부장, d본부장, e본부장, f단장 등 6명 참석(임기만료로 b, d, e본부장은 2023. 11. 20. 퇴직, c 본부장은 같은 해 11. 22. 퇴직)
6) ㉔추진단은 2021. 11. 30. 「2021년 ㉔추진단 운영 결과보고」 후 해산하였고, ㉕TF는 2022. 10. 31. 「㉕TF 운영 결과 보고」 후 해산하였음
7) ‘연수원 민간 위탁개발 공모지침서 작성 컨설팅’[계약업체 (주)㉖㉗, 계약기간: 2022. 3. 14.~5. 14., 계약금액: 8,000,000원]
8) 2021. 11. 22. 임원회의 참석자와 동일(a사장 등 6명 참석)
9)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022. 7. 29., 기획재정부)에 따라 제출하였음

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해당 계획을 의결함으로써 공사의 위 효율화 방안이 최종 확정되었다.

따라서 공사는 최종 확정된 위 효율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연수원의 지속된 운영 수지 적자를 줄이거나 흑자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했다.

그런데 이번 공사 종합감사 과정에서 확인해 본 결과 공사는 2022. 12. 13. 사장 업무보고 등¹⁰⁾에서 2023년 위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하고도 2024. 3월 현재까지 공모나 사업설명회 개최 등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 및 절차도 추진하지 않고 있었다.¹¹⁾

3. 공사 직원의 연수원 숙소 무료 이용

가. 관계 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3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임직원에게 대해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의 운영을 지양하고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운영되지 않는 복리후생제도를 원칙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¹²⁾

그리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¹³⁾

10) 2023년 사장 업무보고 및 ㉔TF(자산운영 수익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2. 11. 1.부터 2023. 3. 6.까지 운영) 결과 위 효율화 방안의 추진 계획을 수립·보고하였음

11) 2024년 사장 업무보고에는 위 효율화 방안의 추진 계획을 미포함하였음

12)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에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13)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라 2012년 공사 설립 시부터 2024년 현재까지 기획재정부로부터 같은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받음

한편, 공사의 「고정자산 운영관리규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시설사용에 따른 비용(대관료, 입장료, 숙박료 등 기타 사용료)은 사용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의 연수원 운영 수지는 [표 2]와 같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계속하여 적자(총 9,441백만 원)를 기록하고 있어 운영수지 개선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공사는 공사 직원이 연수원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직원 복리후생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일부 할인해주더라도 최소한의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연수원의 계속되는 운영 수지 적자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 시 확인한 결과, 공사는 2012. 5. 23. 구 한국방송광고공사로부터 연수원을 승계받은 이후 「연수원 관리지침」 제18조 등에 따라 공사 직원이 연수원 숙소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면제해주고 있었고, 그에 따라 연수원의 운영 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2020. 1. 1.부터 2024. 2. 28.까지 [표 3]과 같이 직원 총 139명(이용인원 총 741명)¹⁴⁾이 숙소를 무료 이용(총 26,450,000원 상당, 연평균 12백만여 원¹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공사 직원의 연수원 숙소 무료 이용 현황

(단위: 명, 천 원)

사용연도	신청인원	이용인원	면제 사용료
2020년	66	354	14,380
2023년	70	374	11,670
2024년	3	13	400
합계	139	741	26,450

주: 2021년과 2022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국군장병 격리시설 및 확진자 치료센터 등으로 활용되어 직원 사용내용 없음

자료: 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14) 신청 인원 기준으로, 공사 직원과 직원의 가족으로 추정됨

15) 2021년과 2022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미사용

조치할 사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은 앞으로 공공기관 혁신계획으로 확정된 KOBACO연수원 운영 효율화 방안의 추진을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직원이 KOBACO연수원 숙소를 이용하는 경우 일정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방송통신위원회

주 의 요 구

제 목 채용제도 운영 및 비정규직 전문위원 채용절차 부적정

기 관 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공사 「인사규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채용계획 수립, 채용공고, 사전심의 등의 채용절차를 거쳐 정규직 사원, 비정규직 전문위원 등 16명을 채용하였다.

2. 채용계획 사전 공개 미실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8조에 따르면 해당 연도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시험방법 등 채용내용에 대한 사항을 사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공사는 2023년에 [표 1]과 같이 비정규직 전문위원 및 정규직 사원(신입 및 경력) 등 총 16명을 채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용계획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다.

[표 1] 2023년도 채용 현황

공고일자	채용일자	채용종류	채용인원
2023. 2. 21.	2023. 5. 19.	기간제 근로자(전문위원) 공개채용	1명
2023. 5. 3.	2023. 7. 31.	정규직 신입·경력사원 공개채용	15명(신입 13명, 경력 2명)
합계			16명

자료: 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3. 비정규직 전문위원 채용계획 변경 부적정

가. 2023년도 비정규직 전문위원 채용 개요

공사는 2023. 2. 21. ‘㉠㉡ 증진사업1)’의 미디어데이터 분석 관련 과제 수행 등을 위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빅데이터, 통계 등 관련 전공 석사 취득 후 만 3년 이상 유관 실무경력이 있는 비정규직 3등급 전문위원2)(초임연봉: 41,100,000 원) 1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하였고, 공고 후 지원자가 없자 같은 해 3. 14. 동일한 내용으로 재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는 없었다.

이에 공사는 2023. 4. 3.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직위의 채용 등급을 전문위원 2등급으로 상향하고 초임연봉을 49,753,000원으로 인상하면서 관련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만 지원할 수 있도록 채용계획을 변경3)하고, 같은 해 4. 4. 공고한 후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같은 해 5. 19. AAA를 전문위원으로 채용(최대 1년 6개월 계약, 정규직 전환 불가)하였으며, 위 전문위원 채용과정은 [표 2]와 같다.

[표 2] 2023년도 공사 비정규직 전문위원 채용과정

최초 채용계획							변경 채용계획					
1.26.	1.30.	2.15.	2.15.	2.16.	2.21.~ 3.6.	3.14.~ 3.23.	4.3.	4.3.	4.4.~ 4.17.	4.18.~ 4.27.	5.19.	
채용 요청	채용계획 사전심사	인사위 의결	방통위 보고	내부결재	공고 (미지원)	재공고 (미지원)	변경계획 인사위 의결	내부 결재	공고 (2명 지원)	서류 및 면접심사	임용 (1명)	

자료: 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나. 지원자격 변경 필요성 검토 미흡

공사 「계약직 운용에 관한 규정」 제4조의2에 따르면 특정학위 또는 특정분

1) 공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 ㉠㉡ 증진사업을 수행
 2) 공사 「직제규정」 제10호 제2항의 ‘연구전문직’ 중 「계약직 운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제2호의 ‘전문위원’에 해당
 3) 공사 ‘제648차 특별인사위원회 회의록’(23. 4. 3.)에 따르면 해당 보직이 단기 계약직이고, 초임연봉이 낮아 경력자가 지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어, 경력조건을 제외하기 위해 채용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됨

야의 근무경력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경력채용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공사는 위 비정규직 전문위원의 직무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와 근무경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23. 2. 16. 경력채용 지원자격을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빅데이터, 통계 등 관련 전공 석사 취득 후 만 3년 이상으로 하는 경력채용 계획을 수립하였다.

한편, 「계약직 운용에 관한 규정」의 [별표 1] “전문위원 및 개방형 계약직의 등급별 기준 및 초임 기본연봉”에 따르면 채용대상자가 소지한 학위등급이 높아지면 이에 해당하는 채용등급이 상향⁴⁾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채용대상자의 초임 연봉도 늘어나 공사의 인건비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공사는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의 경력채용에 대해 학위 자격요건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계약직 운용에 관한 규정」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상향 조정된 해당 학위의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재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사는 최초 채용계획 및 공고에 따른 지원자가 없자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위에 대한 검토 없이 지원자가 없다는 사유로⁵⁾ 2023. 4. 3. ‘임용예정 직무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만 지원할 수 있도록 채용계획을 변경하여 기존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의 자격요건을 석사학위에서 박사학위로 임의로 상향하였다.

다. 사전심사 미실시

공사는 2023. 1. 30. 최초 채용계획에 대해 ㉠팀장, ㉡팀장 등으로 구성된 사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았다.

4) 3등급: 석사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등으로 초임연봉 41,100천 원, 2등급: 박사학위 취득 등으로 초임연봉 49,753천 원

5) ㉠국-57(2023. 4. 3., “㉠증진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 변경”) 및 제648차 인사위원회 회의록

공사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지침」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공사는 비정규직⁶⁾ 채용사유의 적정성, 채용인원 및 기간의 적정성, 예산의 적정성,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사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지침 제4조 제7항 제2호에 따르면 예산범위 내에서 채용계획이 변경되는 등 절차를 생략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심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는 최초 심사 이후 채용계획 변경으로 인해 기존 예산범위를 넘어서는 채용예산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된 채용계획에 대해 사전심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사는 가.항과 같이 비정규직 전문위원회에 대한 채용계획 변경으로 인해 해당 채용예산이 증가⁷⁾하는데도 사전심사를 다시 거치지 않은 채 2023. 4. 3.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다.

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미보고

공사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제한경쟁 시험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전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사항과 달리 채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그 사유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공사는 2023. 2. 15. 최초 채용계획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서로 보고⁸⁾한 후, 같은 해 4. 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초 계획과 달리 지원조건, 채용등급, 예산액(연봉)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채용계획을 의결하면서 방송통신

6) 공사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은 계약직(비정규직)의 일종임

7) 2023. 4. 17. 기존 인건비 예산 중 일부(37,100천 원)를 전용하여 2등급 전문위원회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마련

8)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324 (2023. 2. 15.)

위원회에 변경된 채용계획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채 채용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의 규정과 달리 채용계획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거나, 채용계획을 변경하면서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채용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방송통신위원회

통 보

제 목 지각·조퇴 및 외출 시 연차휴가 공제 부적정

기 관 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복무규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직원이 지각·조퇴 및 외출할 경우 연차휴가에서 공제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하 “혁신지침”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휴가제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8장 휴가-4.휴가종류별 실시방법-가.연가-(9)연가일수의 공제-(라)에 따르면 지각·조퇴·외출, 반일연가 등은 종별 구분 없이 각각의 시간을 모두 합산한 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환산하여 공제하고, 공제 후 남은 8시간 미만의 잔여연가는 다음연도로 이월·저축하도록 되어 있는 등 지각·조퇴·외출의 경우에도 연차휴가와 같이 시간별로 계산하여 공제하도록¹⁾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에서도 지각·조퇴 및 외출이 발생할 경우 8시간은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하고, 공제 후 남은 8시간 미만의 시간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와 같이 실제 사용한 시간을 남아있는 연차휴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공사는 공사 「복무규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지각·조퇴 및 외출의 합계 8시간에 대해서 연차휴가 1일을 실시한 것으로만 규정하고, 8시간 미만의 시간 단위에 대해서는 전체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공사는 직원의 지각·조퇴 및 외출 합계시간 8시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1일을 실시한 것으로 전체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면서도, 공제 후 남은 8시간 미만의 시간에 대해서는 전체 연차휴가에서 공제하지 않음으로써,²⁾ [표]와 같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897명에게 4,072시간의 연차휴가를 공제하지 않았다.³⁾

[표] 지각·조퇴 및 외출에 대한 연차휴가 미공제 현황(2020년~2023년)

(단위: 명, 시간, 천 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미공제 인원		230	226	221	220	897
미공제 시간	1인 평균	3.96	4.24	4.66	5.33	4.53
	합계	910.5	958.5	1,030.5	1,173.2	4,072.7
미공제에 따른 인건비 추정액		25,103	26,579	23,738	32,612	108,032

자료: 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 1)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는 “1년간 외출 15시간, 조퇴 9시간, 지각 1시간, 반일연가 1회가 있는 공무원의 연차계산은 (15시간+9시간+1시간+4시간)÷8시간=3일 5시간”으로 구체적으로 예시함
- 2) 지각·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지각·조퇴는 2시간 단위로, 외출은 10분 단위로 사용하며, 연차휴가와 같이 8시간을 1일로 계산하는 것은 동일하나, 위 3종류 합계 사용시간이 8시간 미만이나 8시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 시간을 전체 연차휴가에서 공제하지 않음(예시: 연간 7시간 사용 시 전체 연차휴가 공제 0시간, 10시간 사용 시 1일(8시간)만 공제하고 남은 2시간은 전체 연차휴가에서 미공제)
- 3) 지각·조퇴 및 외출이 아닌 공사 「복무규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경우 8시간 단위로 1일씩 전체 연차휴가에서 공제하고 8시간 미만 또는 초과할 경우에도 해당 시간을 계산하여 전체 연차휴가에서 공제(예시: 연간 7시간 사용 시 전체 연가에서 7시간 공제, 10시간 사용 시 1일 2시간 공제)

조치할 사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은 지각·조퇴 및 외출에 대한 연차휴가를 공제함에 있어 합당한 사용시간 전부를 전체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방송통신위원회

통 보

제 목 강등 및 정직처분 직원에 대한 보수 감액 규정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보수규정」 제26조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의 징계기간 동안의 보수 감액기준을 정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1)에 따르면 공기업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하고,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이하 “예산지침”이라 한다) Ⅱ.주요항

1) 2021. 8. 31. 개정을 통해 「국가공무원법」을 참고하여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에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직원 징계와 관련한 규정 강화

목별지침-1.인건비-(5)기타²⁾에 따르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액하도록 보수규정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는 위 경영지침과 예산지침 등에 따라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간의 보수는 전액 감액하도록 관련 규정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공사는 「보수규정」 제26조에 강등 및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처분기간 동안 연봉월액의 30%를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위 경영지침 및 예산지침이 개정 시행된 후 강등이나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보수규정」을 개정하지 않아 강등이나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이 발생할 경우 보수를 전액 감액하지 않고 지급할 우려³⁾가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은 강등 및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보수를 전액 감액할 수 있도록 「보수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 2023년 예산지침부터 정직 기간 중 보수 감액을 명문화

3) 2021. 8. 3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기 전인 2020. 10. 7. 정직 2개월(☎국 2급 000, 성회룡) 처분 이후 공사 직원에 대한 강등 또는 정직 처분 없음

방송통신위원회

통 보

제 목 창립기념일의 유급휴일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복무규정」 제18조에 따라 유급휴일을 운영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¹⁾(이하 “혁신지침”이라 한다) 제42조 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 유급휴가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 및 제20조에 따른 연가의 저축 및 특별휴가 외에 다른 휴가제도를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공사는 위 혁신지침과 달리 「근로기준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휴일²⁾이 아닌 창립기념일(5. 23.)을 유급휴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는 추가 인건비는 2022년 62,027천 원, 2023년 62,158천 원으로 추정³⁾된다.

1)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에 따라 공공기관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3·1절, 광복절 등의 국경일, 설날 및 추석 등의 명절, 근로자의 날 등

3) 공사에서 매년 5월 전체 직원의 월 급여를 기준으로 창립기념일(5. 23.)에 해당하는 하루치 인건비(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 1일 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를 추산, 다만 2020년 및 2021년 창립기념일은 토요일 및 일요일로 추가 인건비 미발생

조치할 사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은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지 않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방송통신위원회

주 의 요 구

제 목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자 선정 부적정

기 관 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2020. 1. 16.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라 한다)에 중소기업 광고제작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2020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보조사업」¹⁾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 17. 방통위로부터 교부 결정 통지를 받는 등 [표 1]과 같이 매년 방통위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 지원 사업을 수행하였다.

[표 1]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 지원사업자 선정 현황

(단위: 백만 원)

지원연도	지원예산	TV		라디오	
		업체수	지원금액	업체수	지원금액
2020년	1,850	36개사	전체 제작비의 50% 지원 (지원 최대한도 4,500백만 원)	34개사	전체 제작비의 70% 지원 (지원 최대한도 300백만 원)
2021년	1,350	26개사		20개사	
2022년	1,591	31개사		16개사	
2023년	1,591	31개사		16개사	

자료: 공사 방송통신발전기금 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공사는 위 사업 수행을 위해 매년 [그림]과 같이 방송광고 제작 지원

1) 사업목적: 중소기업에 광고 제작비를 지원하여, 방송광고를 통한 중소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제품 판매증가와 성장에 기여하고, 방송 광고시장과 중소기업간 상호 성장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목적으로 함

을 신청한 중소기업인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계량·비계량평가 및 중소기업 방송 광고 활성화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기업을 선정 하고, 선정된 지원대상기업이 방송광고를 수행(제작)한 후 방송광고 청약서 등과 함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협의회 최종 검증 후 해당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림] 사업추진 방법 및 절차



주: ()는 2차 모집(1차 모집 후 잔여 정원) 관련 예정 월

자료: 공사 방송통신발전기금 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 규정 및 판단기준

공사 「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협의회 운영 규정」 제1조에 따르면 공사는 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수행기관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구비요건, 자격요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계량평가(기업현황, 방송광고활용)와 비계량평가(상품경쟁력, 시장성장)를 합산한 점수에 가점을 부여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지원대상기업을 선정하도록 되어있으며, 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 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세부평가기준	배점기준(TV)
계량 (50점)	기업현황 (30점)	성장성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주)}	상(15점), 중(12점), 하(10점)
		안정성	최근 3년 매출액 순이익율 평균 ^{주)}	상(15점), 중(12점), 하(10점)
	방송광고 활용 (20점)	방송광고 집행예정 규모	(TV) 100백만 원 이상 (라디오) 5백만 원 이상	20점
			(TV) 50백만 원 이상~100백만 원 미만 (라디오) 2백만 원 이상~5백만 원 미만	18점
			(TV) 20백만 원 이상~50백만 원 미만 (라디오) 2백만 원 미만	16점
			(TV) 20백만 원 미만	14점
비계량 (50점)	상품경쟁력 (30점)	경쟁력	가격, 품질, 성능, 판매 등 경쟁력	상(30점), 중상(25점), 중(20점), 중하(15점), 하(10점)
	시장성장 (20점)	독창성	시장 개척 및 선도, 제품의 확산	상(20점), 중상(16점), 중(12점), 중하(8점), 하(4점)
가점 (5점)	고용우수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청년고용우수기업, 사업자등록증 본사 소재지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소재 기업은 가점(5점)부여			

주: (창업기업) 2021년, 2022년 2개년 또는 2022년 기업현황만 있는 경우 <중>으로 평가하고, 2020년~2022년 기업현황이 모두 없을 경우 <중>으로 평가

자료: 공사 방송통신발전기금 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공사는 협의회 심사지원을 목적으로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계량평가

및 가점항목 점수를 평가할 때에는 사업수행기관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계량평가항목 및 가점항목을 정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주관부서에서 계량점수를 잘못 평가

공사 ㉠국 ㉡팀은 2020. 1. 1.부터 2023. 12. 31.까지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업무의 주관부서로서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신청서 등에 대한 서류검토(사전검토), 협의회 심사를 위한 계량평가 및 가점항목평가, 심사표 작성, 협의회 평가 결과 집계 및 확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팀은 사업수행기관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계량평가 및 가점항목 점수를 평가하면서, 2020년 1차(라디오) 사업수행기관인 ㉢㉣(주) 기업현황을 24점으로 평가 후 심사표 작성시 30점으로 잘못 표기하는 등 [별표] ‘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정당 평가 결과’와 같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2개 사업수행기관의 계량점수 등을 심사표에 다르게 표기하거나 평가산식·지표금액을 잘못 적용하는 등으로 협의회에 잘못 산출된 계량점수를 제공하였고, 이를 토대로 협의회 위원들이 작성한 심사표를 취합하여 평가점수 총괄표를 작성하였다.

그 결과 계량평가 항목을 정당하게 평가하였다면 최초 선정결과 안내 시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되었어야 할 3개 사업수행기관([별표] 연번 2, 4, 11)이 예비후보가 되었고, 예비후보가 되었어야 할 2개 사업수행기관([별표] 연번 1, 8)이 최초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되었다.²⁾

나. 공고 등과 다르게 계량점수 평가

공사 ㉠국 ㉡팀은 ‘2021년 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을 담당하면서 계량평가 3개 항목 중 기업현황의 “성장성”의 경우 배점 15점, “안정성”의 경우 배점 15점으로 평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작성한 후 국장의 결재를 받아 ‘2021년 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그런데 ㉡팀은 [표 3]과 같이 운영계획서 내부 결재 시에는 성장성(매출액증가율) 7.0% 이상, 안정성(매출액순이익율 평균) 3.3% 이상인 경우 상(15)점의 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결재를 받고도, 공고 시에는 성장성(매출액증가율) 8.5% 이상, 안정성(매출액순이익율 평균) 2.5% 이상인 경우 상(15)점의 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당초 보고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였고, 실제 평가 시에는 내부 결재한 운영계획서 상의 세부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계량점수를 평가하였다.

[표 3] 2021년 지원신청기업 기업현황 관련 세부평가 기준방안 차이내역

(단위 : %)

구분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안정성(매출액순이익율 평균)		
	상(15점)	중(12점)	하(10점)	상(15점)	중(12점)	하(10점)
내부결재	7.0 이상	0 초과~ 7.0미만	0 이하	3.3 이상	0 초과~ 3.3미만	0 이하
공고	8.5 이상	0 초과~ 8.5 미만	0 이하	2.5 이상	0 초과~ 2.5 미만	0 이하

자료: 공사 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계획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공고내용과 다르게 계량평가³⁾가 이루어짐으로써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 2) 최초 선정된 사업수행기관 중 중도포기 사업수행기관이 다수 발생하여 예비후보로 선정된 3개 업체 모두 최종적으로 ‘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기회를 부여 받음
- 3) 잘못 공고된 성장성 및 안정성 기준을 적용하여 다시 평가를 실시하더라도 선정대상이 예비후보로, 예비후보가 선정대상으로 바뀌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음

조치할 사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은 앞으로 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 사업수행기관 계량점수를 잘못 평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정당 평가 결과

(단위: 점)

연번	구분		평가 항목	평가점수		최종점수		순위		최초 선정 업체수	중도 포기 업체수
	연도	기업명		정당평가	실제평가	정당평가	실제평가	정당평가	실제평가		
1	2020년 1차 (라디오)	㉠㉡(주)	기업현황 (30점)	24.00	30.00	76.00	82.00	46위 (예비12위)	23위 (선정)	34개	15개
2	2021년 1차 (TV)	㉢(주)	가점 (5점)	5.00	0.00	84.44	79.44	22위 (선정)	33위 (예비7위)	26개	14개
3	2022년 1차 (TV)	㉣(주)	기업현황 (30점)	25.00	30.00	86.56	91.56	18위 (선정)	5위 (선정)	22개	69개
4		㉤(주)	가점 (5점)	5.00	0.00	88.11	83.11	13위 (선정)	29위 (예비7위)		
5		㉥(주)		5.00	0.00	83.67	78.67	29위 (예비7위)	53위 (예비31위)		
6	2022년 1차 (라디오)	㉦(주)	기업현황 (30점)	25.00	30.00	83.00	88.00	10위 (선정)	3위 (선정)	11개	26개
7	2023년 1차 (TV)	주㉧(주)	방송광고 활용 (30점)	16.00	14.00	73.44	71.44	51위 (예비32위)	54위 (예비35위)	19개	19개
8		주㉨(주)		18.00	20.00	85.89	87.89	20위 (예비1위)	13위 (선정)		
9		주㉩(주)		18.00	20.00	83.44	85.44	28위 (예비9위)	23위 (예비4위)		
10		㉪(주)		16.00	20.00	81.44	85.44	36위 (예비17위)	24위 (예비5위)		
11	2023년 1차 (라디오)	주㉫(주)		20.00	14.00	91.56	85.56	2위 (선정)	13위 (예비3위)	10개	18개
12		㉬(주)		18.00	14.00	87.44	83.44	11위 (예비1위)	17위 (예비7위)		

주: 잘못 평가한 항목 및 사유

항목	연번	사유
기업현황	1	당초 기업현황 24점으로 평가 후 심사표 작성시 30점으로 표기
	3,6	당기순손실을 순이익으로 표기하여 매출순이익률 평균 차이발생(하10→상15)
가점	2,4,5	수도권 외 가점 5점 미부여
방송광고	7	방송광고집행예정금액 잘못 표기(30백만원→10백만원)
	8,9	산식 잘못 적용(라디오 배점 기준 적용)
	10	방송광고집행예정금액 잘못 표기(23백만원→123백만원)
	11,12	산식 잘못 적용(TV 배점 기준 적용)

자료: 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방송통신위원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공익광고 제작 및 확산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 부적정
기 관 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라 한다)로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방송광고 공공인프라 구축 지원(공익광고 제작 및 확산)」 등 보조사업을 수행하며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정산서가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방통위에 보고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기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의 경우에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16조에 따르면 수행기관이 사업비를 교부받은 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월 사업 및 예산, 이월 발생 사유 및 적정성 판단, 해당 회계연도 사업 추진 경과, 이월 사유 관련 증빙서류, 이월 예산 집행 계획 등의 사항을 주무부서에 제출하여 이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공사는 2022. 1. 27. 방통위에 「방송광고 공공인프라 구축 지원(공익광고 제작 및 확산)」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수행계획(1,592백만 원)을 제출하고, 같은 해 2. 3. 방통위로부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교부조건으로 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았다.

그 후 공사는 같은 해 4. 25. (주)○○○와 ‘㉠㉠사업’ 계약(계약금 68,600천 원, 계약기간 2022. 4. 25. ~ 2023. 4. 30.)을 체결하였고, 계약서 내용에 따라 같은 해 5. 25. 선금으로 48,020천 원을 지급하고 용역 완료 이후 검사를 거쳐 잔금 20,580천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위 잔금 20,580천 원을 차기 연도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방통위로부터 이월 승인을 받아야 하고, 2022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위 잔금 20,580천 원을 이월금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사는 위 잔금 20,580천 원을 차기 연도에 집행할 예정이면서도 방통위로부터 이월 승인을 받지 않았고, 2023. 2. 27. 방통위에 2022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잔금 20,580천 원을 2022. 12. 29. 집행한 것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2023. 3. 7. 보조금 계좌에서 공사 보통예금계좌로 위 20,580천 원을 이체하였다가 같은 해 5. 4. 용역이 완료된 이후 위 잔금을 집행하였다.

이와 같이 공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 등 공익광고 관련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별표] “이월 승인을 받지 않은 보조금 집행 명세”와 같이

계약 금액 중 잔금 총 130,299천 원을 방통위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정산 보고서에는 연도 내 전액 집행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보고하였고, 실제로는 용역이 완료된 후 차기 연도에 이월하여 잔금을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은 앞으로 이월 승인을 받지 않고 교부받은 보조금을 차기 연도에 집행하거나 정산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이월 승인을 받지 않은 보조금 집행 명세

(단위: 천 원)

연번	용역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 금액	잔금 집행금액	정산보고서		보조금 이체일 ^{주)}	실제 잔금 집행 일자
				제출일 (공사→방통위)	집행일		
1	'19년 ㉠㉠사업 ('19. 4. 29. ~ '20. 3. 31.)	74,000	37,000	'20. 2. 27.	'19. 12. 31.	'20. 3. 31.	'20. 6. 8.
2	'20년 ㉠㉠사업 ('20. 5. 8. ~ '21. 5. 15.)	60,470	30,235	'21. 2. 25.	'20. 12. 31.	'21. 3. 31.	'21. 5. 27.
3	'21년 ㉠㉠사업 ('21. 4. 23. ~ '22. 4. 30.)	60,470	18,141	'22. 2. 25.	'22. 2. 17.	'22. 3. 25.	'22. 5. 25.
4	'21년 ㉠㉠사업 ('21. 5. 28. ~ '22. 4. 30.)	48,686	24,343	'22. 2. 25.	'22. 2. 17.	'22. 3. 25.	'22. 8. 31.
5	'22년 ㉠㉠사업 ('22. 4. 25. ~ '23. 4. 30.)	68,600	20,580	'23. 2. 27.	'22. 12. 29.	'23. 3. 7.	'23. 5. 4.
합계	5개 과제 합계	312,226	130,299				

주: 계약금액 중 잔금을 공사의 보조금 계좌에서 공사 일반업무 계좌로 이체한 일자
 자료: 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방송통신위원회

주 의 요 구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부적정
기 관 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2021. 12. 31.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2022. 1. 3.부터 용역 등 입찰 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¹⁾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기준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기준」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위원 수는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7인 이상,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의 경우 5인 이상, 재공고 입찰을 하였으나 유찰되어 수의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모든 경우 평가위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공사는 2022. 8. 16. ‘2022년 ㉔㉔용역(추정가격 122,727,273원)’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에 해당하여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1) 공사 규정 제정 전에는 기획재정부 훈령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기준」 등을 준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함

구성하여야 함에도, 외부위원 3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는 등 [표]와 같이 2022. 1. 4.부터 2023. 3. 7.까지 총 10개 과제에 대해 최소 평가위원 수 기준을 위반(연번 4번)하거나, 외부위원 과반수 기준을 위반(연번 1번 ~ 10번)하는 등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기준을 위반하였다.

[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기준 위반 명세

(단위: 천 원)

연번	위원회 개최일자	사업명	추정가액	규정상 위원회 구성	실제 위원회 구성			비고
					총계	내부	외부	
1	'22. 1. 4.	2022년 @@용역	60,000	5인 이상 (외부위원 과반수)	8	4	4	외부위원 수 미달
2	'22. 3. 16	2022년 @@용역	186,364	7인 이상 (외부위원 과반수)	8	4	4	외부위원 수 미달
3	'22. 6. 9.	2022년 @@용역	250,000	7인 이상 (외부위원 과반수)	8	4	4	외부위원 수 미달
4	'22. 8. 16.	2022년 @@용역	122,727	7인 이상 (외부위원 과반수)	6	3	3	최소위원 수 미달 외부위원 수 미달
5	'22. 12. 12.	2023년 @@구매	100,800	7인 이상 (외부위원 과반수)	8	4	4	외부위원 수 미달
6	'22. 12. 12.	2023년 @@구매	150,000	7인 이상 (외부위원 과반수)	8	4	4	외부위원 수 미달
7	'22. 12. 29.	2023년 @@용역 업체 선정	60,000	5인 이상 (외부위원 과반수)	8	4	4	외부위원 수 미달
8	'23. 1. 26.	2023년 @@유지보수	155,000	7인 이상 (외부위원 과반수)	8	4	4	외부위원 수 미달
9	'23. 2. 1.	@@용역	1,008,403	7인 이상 (외부위원 과반수)	8	4	4	외부위원 수 미달
10	'23. 3. 7.	2023년 @@용역	211,818	7인 이상 (외부위원 과반수)	8	4	4	외부위원 수 미달

자료: 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은 앞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제
안서 평가 업무처리 기준」에서 정한 평가위원회 구성 기준을 위반하는 일이 없
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방송통신위원회

통 보

제 목 국고보조사업 관련 여비집행 부적정

기 관 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보조금으로 택시비 등 직원의 여비를 집행하고 있다.

한편, 공사는 임직원이 공사 업무로 출장을 갈 때 근무지 외 출장의 경우 교통운임, 숙박비, 식비 외에 출장지에서의 교통비 등의 용도로 일비를 정액으로 지급하고,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일일출장비를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기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 제4조 제5항에 따르면 수당, 복리후생비, 여비 등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보조비목은 그 규정에 따라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¹⁾

그리고 공사의 「여비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여비의 지급은 실지급을, 그 사용은 법인카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여비의 각 항목당 정액이 규정된 경우 그 정액은 실비정산의 한도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1) 같은 지침 제4조 제3항 관련 [별표 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에 따르면 여비 중 국내여비는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위 규정 제10조 관련 [별표 1] “국내여비 기준표”에 따르면 근무지 외 출장비 중 일비는 1일당 20,000원²⁾을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제13조 관련 [별표 3] “근무지 내 일일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르면 근무지 내 일일출장비는 10,000원 또는 20,000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출장지에서 보조금으로 택시비를 집행할 때에는 일비 또는 일일출장비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고, 보조금 카드로 택시비를 집행하고 공사의 자체 예산으로 일비 또는 일일출장비를 현금으로 추가 집행하는 경우 그 합계액이 각 비목의 한도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기간 동안 공사 소속 직원의 국고보조사업 관련 출장비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공사 ㉠팀 대리 ABC는 「㉡㉢ 지원사업」을 담당하면서 2020. 1. 29. 세종시로 출장을 가서 일비 한도액인 20,000원을 20,700원 초과하여 택시비 40,700원을 보조금 카드로 집행하고, 같은 해 2. 5. 공사 자체 예산에서 본인에게 일비 20,000원을 지급하는 지출원인행위서를 기안하여 팀장 BCD의 결재를 받아 ㉠팀에 제출하여 다음 날 일비를 수령하였다.

이와 같이 공사는 [별표] “국고보조사업 관련 여비 과다집행 명세”와 같이 2020. 1. 29.부터 2023. 12. 13.까지 「㉡㉢ 지원사업」 등 4개 국고보조사업에서 총 10명이 14회에 걸쳐 보조금으로 택시비를 집행하면서 일비 또는 일일출장비 한도액을 초과하여 총 257,160원을 과다하게 집행하고, 총 17명이 25회에 걸쳐 국

2) 2023. 12. 27. 위 여비규정이 개정되기 전의 기준임

고보조금으로 택시비를 집행하였는데도 공사 자체 예산으로 일비 또는 일일출장비를 추가 지급하여 일비 또는 일일출장비의 비목별 한도액을 초과하여 총 547,290원을 과다하게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은 보조금으로 일비 등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등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국고보조금과 중복하여 지급한 일비 또는 일일출장비를 각각 반납 및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국고보조사업 관련 여비 과다 집행 명세

(단위: 원)

연번	소속	성명	보조사업 교통비 사용		관련 비목	보조금 과다 집행		보조금과 별도로 일비 등 추가 지급		
			사용 일시	택시비		한도액	한도 초과 지급	지급 일자	지급액	중복 지급액
1. ㉠㉡ 지원사업										
1	㉠팀	ABC	2020-01-29 2020-01-29	20,760 19,940	일비	20,000	20,700	2020-02-06	20,000	20,000
2	“	BCD	2020-05-07 2020-05-07	21,550 19,300	일비	20,000	20,850	2020-05-15	20,000	20,000
3	“	○○○	2020-09-10 2020-09-10	22,700 25,200	일일출장비 (근무지내출장)	20,000	13,950	2020-09-25	10,000	10,000
		13,950					“	10,000	10,000	
4	“	○○○	2020-11-24	11,000	일일출장비 (근무지내출장)	10,000	37,500	2020-12-03	10,000	10,000
			2020-11-24	17,500						
			2020-11-24	19,000						
5	“	○○○	2021-04-12	18,900	일일출장비 (근무지내출장)	10,000	8,900	2021-04-14	10,000	10,000
6	㉠팀	○○○	2023-06-01	18,800	일비	40,000	·	2023-06-07	20,000	19,310
		○○○	2023-06-01	19,820				“	20,000	19,310
7	“	○○○	2023-12-13	14,700	일일출장비 (근무지내출장)	20,000	·	2023-12-21	10,000	7,350
		○○○						·	2023-12-21	10,000
소계							115,850		140,000	133,320
2. ㉢㉣ 사업										
8	㉠팀	BCD	2020-02-06	21,900	일비	40,000	540	2020-02-10	20,000	20,000
		○○○	2020-02-06	19,180			540	“	20,000	20,000
9	“	○○○	2020-10-21 2020-10-21	21,500 24,400	일일출장비 (근무지내출장)	30,000	5,300	2020-11-04	10,000	10,000
		○○○					5,300	“	10,000	10,000
		○○○					5,300	“	10,000	10,000
10	“	○○○	2021-11-10	12,400	일비	40,000	·	2021-11-15	20,000	6,200
		○○○					·	“	20,000	6,200
11	“	○○○	2021-11-22	9,200	일비	40,000	·	2021-11-24	20,000	4,600
		○○○					·	“	20,000	4,600
12	㉠팀	○○○	2023-03-24	21,930	일비	40,000	·	2023-03-27	20,000	18,790
		○○○	2023-03-24	15,650			·	“	20,000	18,790
13	“	○○○	2023-05-11	7,700	일비	40,000	·	2023-05-18	20,000	3,850
		○○○					·	“	20,000	3,850
14	“	○○○	2023-05-15	14,100	일일출장비 (근무지내출장)	20,000	4,400	2023-05-18	10,000	10,000
		○○○	2023-05-15	14,700			4,400	“	10,000	10,000
15	“	○○○	2023-05-17	16,800	일비	40,000	·	2023-05-18	20,000	15,800
		○○○	2023-05-17	14,800			·	“	20,000	15,800

연번	소속	성명	보조사업 교통비 사용		관련 비목	보조금 과다 집행		보조금과 별도로 일비 등 추가 지급		
			사용 일시	택시비		한도액	한도 초과 지급	지급 일자	지급액	중복 지급액
16	“	○○○	2023-06-09 2023-06-09	23,200 25,600	일일출장비 (근무지내출장)	30,000	6,270	2023-06-12	10,000	10,000
		6,270					“	10,000	10,000	
		6,270					“	10,000	10,000	
17	“	○○○	2023-07-25 2023-07-25	21,900 20,120	일비	20,000	22,020	2023-07-28	20,000	20,000
18	“	○○○	2023-11-09 2023-11-09	26,400 31,500	일일출장비 (근무지내출장)	20,000	18,950	2023-11-15	10,000	10,000
		18,950					“	10,000	10,000	
19	“	○○○	2023-11-23 2023-11-23	25,000 28,600	일비	40,000	6,800	2023-11-30	20,000	20,000
		6,800					“	20,000	20,000	
20	“	○○○	2023-11-28	9,700	일비	40,000	.	“	20,000	4,850
		○○○					.	“	20,000	4,850
소계							118,110		440,000	308,180

3. ☐☐사업주)

21	☐팀	○○○	2022-06-09 2022-06-09 2022-06-09	15,700 15,400 6,500	일일출장비 (근무지내출장)	20,000	8,800	2022-06-21	10,000	10,000
		8,800					2022-06-21	10,000	10,000	
		○○○					2022-08-22 2022-08-22	13,000 12,600	일일출장비 (근무지내출장)	20,000
○○○	2,800	“	10,000	10,000						
23	“	○○○	2022-11-01 2022-11-01	24,460 20,320	일비	60,000	.	2022-11-01	20,000	14,930
		○○○					.	“	20,000	14,930
		○○○					.	“	20,000	14,930
소계							23,200		100,000	84,790

4. ☐☐ 사업

24	☐팀	○○○	2023-08-09	8,000	일일출장비 (근무지내출장)	20,000	.	2023-08-14	10,000	4,000
		○○○					“	10,000	4,000	
25	“	○○○	2023-11-03	13,000	일일출장비 (근무지내출장)	20,000	.	2023-11-07	10,000	6,500
		○○○					.	“	10,000	6,500
소계									40,000	21,000
합계							257,160		720,000	547,290

주: ○○부 국고보조사업으로 공사는 □□진흥공사와 협약을 맺고 바우처 서비스의 품질관리, 분야별 수행기관 선정 업무 등을 수탁 받아 수행하였음

자료: 공사 제출자료 재구성